

안 전 기 준

접촉성 금속 장신구

부속서 22

(Metal Jewelry in contact with skin)

1. **적용범위** 이 기준은 반지, 목걸이, 팔찌, 장식용 체인, 귀고리, 펜던트(pendant), 발찌, 손톱장식품, 피어싱, 배꼽찌, 손목시계, 시계줄, 머리장식품 등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에 적용하며, 플라스틱, 목재 등의 표면을 금속재료로 도금한 제품도 포함한다. 다만,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에서 별도의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품목과 금(함량이 58.5%이상), 은 제품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.

2. **관련 표준** 다음에 나타내는 표준은 이 기준에 인용됨으로서 이 기준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. 이러한 관련 표준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.

KS K 0853 피부에 접촉되는 제품에서 방출되는 니켈함량시험방법 (교체노출법)

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 어린이용 장신구

3. 안전 요건

3.1 **겉모양** 연마가 되어있지 않거나 갈다 남은 곳이 눈에 띄이지 않아야 하며 모서리는 둥글게 연마 되어야 하고, 피부를 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끝처리는 없어야 한다.

3.2 유해원소

3.2.1 **니켈 용출량** 니켈 용출량이 $0.5 \mu\text{g}/\text{cm}^2/\text{week}$ 이하이어야 한다.

4. 시험방법

4.1 **겉모양** 육안 및 촉감으로 확인한다.

4.2 유해원소

4.2.1 **니켈 용출량** **공급자적합성 안전기준 부속서 11.A**를 따른다.

5. **표시사항** 제품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쉽게 지워지지 않는 방법으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품의 크기 등으로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최소단위 포장 또는 꼬리표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. 또한 사용상 주의사항은 제품 또는 포장 이외의 사용 설명서에 별도 표시할 수 있다.

1. **사용연령** : 14세 이상
2. **제조연월**
3. **제조자명**
4. **수입자명(수입품에 한함)**
5. **주소 및 전화번호**(국내 제조품은 국내 제조자, 수입품인 경우에는 수입자)
6. **제조국명**(국내 제조품은 생략 가능, 수입품은 대외무역법에 의거 표기)
7. **사용상 주의사항(필요시)**

제 정 : 기술표준원고시 제2012-0176호(2012.04.25)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-686호(2015.12.30)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7-033호(2017. 2. 8)
개 정 :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-195호(2018. 6. 29)